

도시관리계획(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도시관리계획(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(도시계획과, ☎ 032-560-6872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2023. 1. 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결정(변경)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마목의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 하는 사항임

2. 위 치

-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14 일원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-	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14 일원	148,031.5	-	148,031.5	

나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1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(변경없음)

(1) 용도지역(변경없음)

구분	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	148,031.5	-	148,031.5	100.0	
주거 지역	소계	126,049.7	-	126,049.7	85.1	
	제1종 일반주거지역	8,776.6	-	8,776.6	5.9	
	제2종 일반주거지역	4,173.2	-	4,173.2	2.8	
	제3종 일반주거지역	113,099.9	-	113,099.9	76.4	
자연녹지지역		21,981.8	-	21,981.8	14.9	

(2) 용도지구(변경없음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1	경서취락 지구	집단취락 지구	서구 경서동 4번지 일원	19,689㎡	-	

(3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(변경없음)

○ 도로총괄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등급	류별	폭원 (m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		비고
						기정	변경	증감	
합계				8	1,598.1	17,871.7	17,871.7	-	
일반도로	계			6	1,449.9	17,348.6	17,348.6	-	
	중로	2	15	1	489.0	8,289.9	8,289.9	-	
		3	12	2	535.1	5,477.5	5,477.5	-	
	소로	2	8	3	425.8	3,581.2	3,581.2	-	
보행자 전용도로	계			2	148.2	476.5	476.5	-	
	소로	3	4	2	148.2	476.5	476.5	-	
가각 및 완화차선						46.6	46.6	-	

○ 도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2	767	15	보조 간선	489.0	대로1-22호선	중로2-184호선	일반도로	경서지구내부 도로	2007.11.6	
기정	중로	3	295	12	국지 도로	217.0	중로2-184호선	소로2-61호선	일반도로	경서지구내부 도로	인고93-130 *93.9.28	
기정	중로	3	296	12	국지 도로	318.1	중로2-767호선	중로3-295호선	일반도로	경서지구내부 도로	2007.11.6	
기정	소로	2	1	8	국지 도로	114.4	중로3-296호선	중로3-295호선	일반도로	경서지구내부 도로	2007.11.6	
기정	소로	2	2	8	국지 도로	214.7	중로3-296호선	중로3-295호선	일반도로	경서지구내부 도로	2007.11.6	
기정	소로	2	3	8	국지 도로	96.7	소로2-2호선	소로2-2호선	일반도로	경서지구내부 도로	2007.11.6	
기정	소로	3	1	2.5~4	특수 도로	133.3	중로3-295호선	경서동 산14	보행자 전용도로	경서지구내부 도로	2007.11.6	
기정	소로	3	2	4	특수 도로	14.9	중로3-295호선	소로2-3호선	보행자 전용도로	경서지구내부 도로	2007.11.6	

○ 주차장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1	주차장	주차장	서구 경서동 산14입 일원	685.6	-	685.6	2007.11.6	
기정	2	주차장	주차장	서구 경서동 산14입 일원	565.2	-	565.2	2007.11.6	

○ 녹지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1	녹지	완충녹지	경서동 산43-5입 일원	13,075.7	-	13,075.7	2007.11.6	
기정	1	녹지	경관녹지	경서동 산32-1입 일원	1,301.4	-	1,301.4	2007.11.6	
기정	2	녹지	경관녹지	경서동 산24-6입 일원	322.1	-	322.1	2007.11.6	

○ 공원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1	공원	근린 공원	경서동 산31입 일원	21,935.2	-	21,935.2	2007.11.6	

○ 가스공급시설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1	가스공급 설비	정압소	경서동 77-4전 일원	16.0	-	16.0	2007.11.6	

다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(변경)

1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○ 단독주택용지(변경없음)

- 도로의 이면부에서 진입해야 하는 가구는 1열로, 내부가구는 2열로 구성

가구번호	획지번호	면적(㎡)	비고
총계	30필지	7,445.9	
A1	1	239.3	제1종일반주거지역
	2	238.7	
	3	238.2	
	4	237.8	
	5	268.9	
	6	245.1	
	7	239.7	
	8	239.1	
	9	238.8	
	10	238.3	
소계		2,423.9	
A2	1	244.9	제1종전용주거지역
	2	243.6	
	3	243.5	
	4	329.8	
소계		1,061.8	
A3	1	259.2	제1종전용주거지역
	2	258.7	
	3	259.5	
소계		777.5	
A4	1	230.2	제1종전용주거지역
	2	230.1	
	3	229.8	
	4	230.1	
	5	229.9	
	6	230.1	
	7	226.5	
	8	257.9	
	9	260.3	
	10	260.0	
	11	258.9	
소계		2,643.8	
A5	1	270.2	제1종전용주거지역
	2	268.8	
소계		539.0	

※ 필지 분할은 불허, 합병은 규제내용이 동일한 2개 필지에 한해 적용

○ 공동주택용지(변경)

- 기정

획지번호	면적 (㎡)			세대수 (호)	인구수 (인)	용적률 (%)	층수 (층)	면적 (㎡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				
합계	81,533.8	-	81,533.8	1,470	4,116	160	-	-	
B1	40,344.7	-	40,344.7	587	1,644	160	15층 이하	60-85㎡이하	일반분양
	11,441.5	-	11,441.5	133	372			85㎡초과	
B2	29,747.6	-	29,747.6	750	2,100	160	15층 이하	60㎡이하	국민임대

주) 1.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포함 산정된 것임

- 변경

획지번호	면적 (㎡)			세대수 (호)	인구수 (인)	용적률 (%)	층수 (층)	면적 (㎡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				
합계	81,533.8	-	81,533.8	1,470	4,116	160	-	-	
B1	40,344.7	-	40,344.7	587	1,644	160	15층 이하	60-85㎡이하	일반분양
	11,441.5	-	11,441.5	133	372			85㎡초과	
B2	29,747.6	-	29,747.6	750	2,100	160	15층 이하	60㎡이하	통합공공임대

주) 1.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포함 산정된 것임

- 변경 사유서

도면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B2	-	○비고란 내 표기내용 변경 - 국민임대 ⇒ 통합공공임대	○ 법령개정에 따라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에서 포괄적 임대주택 유형인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표기를 변경하여 임대주택 부지의 복합적·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

○ 근린생활용지(변경없음)

가구번호	획지번호	면 적 (㎡)		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C	1	820.1	-	820.1	※ 필지 분할은 불허, 대규모 개발 필요한 곳에 한해 합병가능
	2	820.2	-	820.2	
	3	820.0	-	820.0	
	4	818.6	-	818.6	
합 계		3,278.9	-	3,278.9	

○ 기타용지(변경없음)

용 지 분 류	획지번호	면 적 (㎡)		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주 차 장	주-1	685.6	-	685.6	전체부지면적의 0.8%
	주-2	565.2	-	565.2	
합 계		1,250.8	-	1,250.8	

2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○ A1(변경없음)

도면번호	획지번호	구 분	계획내용
A1	-	지정용도	○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(순수주거용도), 6가구 이하 ○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(1층에 한하여 연면적의 2/5 범위내 허용)
		불허용도	○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○ 60% 이하
		용적률	○ 150% 이하
		높 이	○ 최고 높이 : 4층
		배 치	○ 별표3의 A
		형 태	○ 별표2의 A
		색 채	○ 별표4의 A
		건축선	○ 건축한계선 1m

○ A2~A5(변경없음)

도면번호	획지번호	구 분	계획내용
A2,A3, A4,A5	-	지정용도	○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(순수주거용도), 4가구 이하
		불허용도	○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○ 50% 이하
		용적률	○ 80% 이하
		높 이	○ 최고 높이 : 3층
		배 치	○ 별표3의 A
		형 태	○ 별표2의 A
		색 채	○ 별표4의 A
		건축선	○ 건축한계선 1m

○ E1, E2(변경없음)

도면번호	획지번호	구 분	계획내용
B1,B2	-	지정용도	○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(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)
		불허용도	○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○30% 이하
		용적률	○160% 이하
		높 이	○최고 높이 : 15층
		배 치	○별표3의 B
		형 태	○별표2의 B
		색 채	○별표4의 B
		건축선	○건축한계선 3m : 가로변 ○건축한계선 5m : 단독주택지 경계

○ C(변경없음)

도면번호	획지번호	구 분	계획내용
C	-	지정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-제1종 근린생활시설 -종교시설(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것에 한함) •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건축법시행령의 -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, 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골프연습장 제외) -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9의 의료시설(격리병원,장례식장 제외) -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10의 교육연구시설 -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11의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 -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13의 운동시설(골프연습장제외) -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14의 업무시설 -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20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,세차장
		불허용도	○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○60% 이하
		용적률	○250% 이하
		높 이	○최고 높이 : 6층
		배 치	○별표3의 C
		형 태	○별표2의 C
		색 채	○별표4의 C
		건축선	○건축한계선 2m : 가로변 ○건축한계선 1m : 이면부(보행자도로경계)

3) 건축물의 용도·형태·배치 등에 관한 계획: (별표참조)(변경없음)

【별표1】 건축물 용도 분류표(변경없음)

구분	A	B	C
지정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(순수 주거 용도 A1-①~⑩은 6가구이하, A2~A5는 4가구 이하) • 건축법 시행령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(A1-①~⑩의 1층에 한하여 연면적의 2/5내에서 허용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- 공동주택 중 아파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종 근린생활시설 - 종교시설(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것에 한함) •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건축법시행령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,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골프연습장 제외) - 의료시설(격리병원,장례식장 제외) - 교육연구시설 -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 - 운동시설(골프연습장제외) - 업무시설 -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, 세차장
권장 용도	-	-	-
불허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정용도,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• 지하층 주거용도 		

【별표2】 건축물 형태 분류표(변경없음)

용 도	도면 표시	건축물의 형태
단 독 주택 용 지	A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%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지붕을 말함 •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/10~7/10이 되도록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 •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(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) •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
공동 주택 용 지	B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,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※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. •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 (구배는 3/10~7/10이 되도록 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%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-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
근 린 생활 시 설 용 지	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• 옥상의 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하고,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•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 • 근린생활시설의 1층 셔터는 벽면의 50%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•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±15cm 이내로 설치 -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

【별표3】 건축물 배치계획(변경없음)

용 도	도면 표시	건축물의 배치
단 독 주 택 용 지	A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.2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1m이하의 생 울타리 담장으로 설치 • 폭 12m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벽면에 조경,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
공 동 주 택 용 지	B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담장 설치 :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: 투시형이나 생 울타리 담장(높이 1.2m 이하)설치를 권장 - 녹지시설에 면한 담장 : 생울타리담장(높이 1m이하) 설치 - 동일 블록 내 담장은 유사한 색상과 재료사용, 통일화된 형태로 블록별 일체감 부여 • 담장설치불허구간 : 보행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 • 같은 단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가급적 한가지로 통일토록 권장
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	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로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•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벽면에 조경,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

【별표4】 건축물의 색채 분류표(변경없음)

용도	도면 표시	건축물의 색채
단독주택용지	A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(강조색은 가능) 저채도 색채를 사용 •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• 검정색 계통의 벽돌사용을 지양하여 밝고 명랑한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
공동주택용지	B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화를 위하여 동측은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 사용 • 인천시의 시색인 청색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• 주변은 안정된 주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침착한 색조계열 사용
근린생활시설용지	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활동축으로서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 (단, 강조색은 가능) •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

■ 색채계획목표

- 색채계획은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로서 주민들에게 심미감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느끼도록 하는 요소임
 -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한 색채 사용
 - 인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색채감의 조성
 - 구역 내의 변화로운 색채 형성으로 식별성 및 미관의 개선
 - 대상주민뿐만 아니라 도로를 통해 보여지는 가로경관의 시각효과 개선

■ 색채의 분류

- 자율적인 색채계획을 최대한 보장하되 색채사용의 범위를 명시하여 색채적용의 융통성을 부여토록 함
-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, 보조색,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,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
 - 주조색 :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인 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%이상을 차지
 - 보조색 : 주조색 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 ~ 30%를 차지
 - 강조색 :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%미만을 차지

【별표5】 차량동선, 주차시설, 단지 내 시설물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기 타 사 항

■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

-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
 - 간선 및 집산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
- ① 차량출입불허구간
 - 공동주택(아파트) 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30m이내의 구간
 -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10m이내 구간
 - 버스정류장, 횡단보도,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
- ② 공동주차통로
 - 획지 2개소당 1개의 공동주차통로 설치를 유도하며 통로폭 최소 3 m이상 확보(권장)
(단, 획지의 분할 및 합병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위치 선정 가능)
- 주차에 관한 계획
 - 공동주차장 설치 및 공동진출입 유도
 - ‘주차장법’ 및 ‘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’ 에 따라 주차장 확보유도
 -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자주식 주차장 설치유도

■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

- 기본방향
 - 보행활동 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
 - 가로시설물의 형태, 크기, 배치,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치
 -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,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편의시설물 설치
 -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

【별표6】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용도	도면 표시	도시계획도로																								
도시 계획 도로		가로 시설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한 수량으로 설치토록 유도 - 신호등, 가로등, 안내표지판 등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설치함으로써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. 																							
		식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종의 선택시 지역별, 가로망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- 인천시의 시목인 목백합 또는 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 - 가로수는 차도로부터 0.5m, 건물외벽으로부터 2~3m 이상 띄어서 식재하며, 식재간격은 6~8m을 기준으로 함 																							
		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-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 -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• 보도 -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 - 재료는 투수성재료를 사용 유도 • 연석 -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- 재료는 화강석(인조화강석)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																							
		조명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로등 - 조명등의 설치타입은 도로폭과 바닥재질 등 주변여건에 적합되도록 선택 - 단독주택지내 가로등은 눈부심 방지를 위해 백열등과 같은 자연색조의 등을 사용하고 빛의 산란을 방지하기위해 불투명 반사갓을 사용한다 • 보행등 - 간선가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킨다.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하부조명강화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34 1585 1428 1809"> <thead> <tr> <th>조명</th> <th>해당용도</th> <th>높이</th> <th>간격</th> <th>광원</th> <th>조명방식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블라드형 보행등</td> <td>보행자전용/우선도로</td> <td>0.8-1.5m</td> <td>2-4m</td> <td>백열등 나트륨등</td> <td>측향/하향 간접/직접조명</td> </tr> <tr> <td>집지형 조명등</td> <td>주요조형물 또는 식재, 건물의 외벽, 보도의 바닥</td> <td>집지형</td> <td>불규칙</td> <td>백열등 나트륨등</td> <td>상향/측향/하향측 간접조명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조명	해당용도	높이	간격	광원	조명방식	블라드형 보행등	보행자전용/우선도로	0.8-1.5m	2-4m	백열등 나트륨등	측향/하향 간접/직접조명	집지형 조명등	주요조형물 또는 식재, 건물의 외벽, 보도의 바닥	집지형	불규칙	백열등 나트륨등	상향/측향/하향측 간접조명
	조명	해당용도	높이	간격	광원	조명방식																				
블라드형 보행등	보행자전용/우선도로	0.8-1.5m	2-4m	백열등 나트륨등	측향/하향 간접/직접조명																					
집지형 조명등	주요조형물 또는 식재, 건물의 외벽, 보도의 바닥	집지형	불규칙	백열등 나트륨등	상향/측향/하향측 간접조명																					
	기타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육교, 계단,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,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(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,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, 옥외광고물 관리법, 인천시 C·I·P 기준 등) 																								

【별표7】 옥외광고물 설치기준(변경없음)

-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(C.I.P)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
 - 가로시설물, 안내판, 옥외광고물,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

【별표8】 기타사항(변경없음)

- 교통영향평가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,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,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서구 관련조례를 준용함
-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

4. 지형도면: 게재 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-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